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찬 원 의원)

의안 번호	401
----------	-----

발의연월일: 2021년 10월 13일

발 의 자: 박찬원 의원

찬 성 자: 전수일, 지광천, 심현정의원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 금액을 명시하여 조례 취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교육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안전교육의 구체적 제시 및 전문교육기관의 위탁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 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30만원으로 명시(안 제9조)
- 다. 고령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21. 07. 30. ~ 2021. 08. 19.(20일간), 의견제출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1. 09. 29.~ 2021. 10. 01., 의견제출 없음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을 할”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을 할”로 한다.

제10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박찬원 의원
연락처	(033) 330 -2502